

201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I. 예비비 지출 총괄

- 일반회계에서 총 1건, 2억원이 소송 공탁금으로 예비비가 지출됨.
 - 도시계획시설 관련 소송(공공운영비) 2억원

II. 검토의견

-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에 대해 시설 폐지를 전제로 공공기여 및 불허용도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서울시는 소송결과에 따라 공공기여 및 불허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잠원동 66-2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여 재처분을 이행하였으나, 토지소유주가 기 확정판결 취지에 반한 처분이라는 사유로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간접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간접강제 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억원

공탁을 조건으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게 되어 (집행정지 청구 판결, '18.1.19.) 해당 공탁금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임.

- 좀 더 살펴보면¹⁾, 서울시는 대상지 지구단위계획안에서 공공기여 25% 이내 및 골프연습장 불허용도 지정 등을 포함하였으나, 공공기여 25% 요구는 이익형량이 정당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아파트지구 조례 규정²⁾ 및 한시적 가설건축물이라는 사유로 옥외골프연습장을 불허용도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에(도시관리계획안 결정반려처분 취소소송, '17.2. 확정판결) 의해 패소함에 따라, 공공기여 및 불허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여('17.11.16.) 재처분을 이행함.

그러나,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하향 조정³⁾과 불허용도에 관한⁴⁾ 사항이 기 확정판결 취지에 반한 처분이라는 사유를 들어 토

1) 관련 소송 현황(자료: 시설계획과)

【소송 ①】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반려처분 취소소송 : 1·2심 패소('17.2.24. 확정판결)

- 공공기여 25% 요구 및 옥외골프연습장 불허용도 지정은 타당하지 않음

【소송 ②】 간접강제 소송 : 1·2·3심 패소('17.11.21. 확정판결)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20일('17.11.17.) 이내 처분(경과시 1일 650만원)

【소송 ③】 간접강제 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18.1.19. 간접강제 집행정지 판결)

- 담보 2억원을 조건으로 본안(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시까지 간접강제 집행정지

【소송 ④】 청구이의의 소 : 1심 승소('18.8.16. 1심 판결)

- 확정판결 취지에 반하지 않음(공공기여 미요구, 골프연습장 불허용도 미포함)

【소송 ⑤】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소송 : 1심 승소('18.12.14. 1심 판결)

- 옥외골프연습장 불허용도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용적률 적용은 재량행위로서 적법함

2)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별표4(개발잔여지 건축허용 용도)의 용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허용도로 지정한 사항

3) 당초 계획안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를 기준(허용)용적률로 하고 상한용적률을 400% 이하로 하였으나,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상한용적률을 200% 이하로 함 (붙임1)

4)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용도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토지소유주는 반포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를 보면 '구역 전체에 옥외골프연습장이 불허용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반포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연계는 사실상 골프

지소유주가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시가 패소함으로써(‘17.11.21. 확정판결) 간접강제금을 납부해야⁵⁾ 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간접강제 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18.1.10.) 2억원 공탁을 조건으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게 되어(집행정지 청구 판결, ‘18.1.19.) 해당 공탁금 2억원이 예비비로 지출된(지출결정일자 ‘18.1.29., 지출일자 ‘18.1.30.) 것으로 파악됨.

- 해당 청구이의의 소는 1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였고(‘18.8.16.) 토지소유주가 이에 대해 항소한(‘18.9.11.) 상태이며, 토지소유주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18.2.12.)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하고(‘18.12.14.) 토지소유주가 항소한(‘19.1.9.) 상태임.

즉, 현재 2건의 소송이 2심 진행 중인 가운데, 1심 판결에서는 옥외골프연습장 불허용도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용적률 적용은 재량행위로서 적법함을 들어 서울시가 1심 승소한 것으로 파악됨.

- 간접강제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집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간접강제 집행이 ‘17년 말(‘17.11.21.)에 확정판결됨으로써 ‘18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예비비 지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한편, 이번 결산검사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누락이 지적되었는데, 예비비 지출시 관련 조례에⁶⁾ 따라 상임위

연습장 불허와 동일하다고 주장함

5) 판결문 송달일(‘17.7.20.)로부터 120일 이내(‘17.11.17.) 처분하지 않고 경과시에는 1일 650만원 간접강제금을 납부

6)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

원회 분기별 보고를 이행해야 할 것임.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정희
연락처	02-2180-8206
이메일	rienrien@seoul.go.kr

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1〉 잠원동 66-2 일대 지구단위계획(자료: 시설계획과)

구 분		신청(입안)	결 정	비 고
획 지 계 획		획지 1-1 : 10,562.3m ² 획지 1-2 : 2,614.6m ²	특계 : 13,176.9m ²	
용 도 지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변경없음
용 도 계 획	불 허	안마원, 장의사, 정신병원,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안마원, 장의사, 정신병원,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 기타 주변 정주환경, 교육환경, 경관 저해용도 등(세부개발 계획 시 수립중인 반포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지 정	근생, 운동시설	삭제	
	권 장	근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아동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아동관련시설	
용 적 륜		기준(허용) 200% 이하 상한 400% 이하(기부채납)	기준 120% 허용 150% 이하 상한 200% 이하(기부채납)	
건 폐 율		50% 이하	50% 이하	
높 이		30m 이하	20m 이하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 가로변 2m 공공보행통로 : 북측 학교측 폭 2m	건축한계선 : 가로변 2m 공공보행통로 : 북측 학교측 폭 6m 이상	
기 반 시 설		신설되는 기반시설 없음	세부개발 계획시 구체적 건축 규모 및 건축계획에 따른 필요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	학교 폐지